

〈가람재활주간보호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 목적 및 급여계약)

1.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2.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3.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4.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 ① 계약 당사자
 - ② 계약기간
 -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 ④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5.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2조 (계약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시설과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2.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3.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기관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문자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1.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①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 ②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 ③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 ④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 ⑤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 ⑥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권리)

-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 3.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 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의무)

-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 및 병적 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3. 인적 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6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1.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센터장이 정한다.
- 2.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3.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 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4.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5.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1. 센터는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 기일 5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통지 방법은 전자 문서, 전산시스템이나 휴대전화 문자 및 알림 톡, 우편, 대면, 서면 등의 경로로 전달 할 수 있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①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재 계약 시 안내
 - ②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상담 또는 문자를 통하여 안내를 드린다.
 -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 ④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 되었을 때
3. 급여비용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다.
 - ① 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 ②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안내하며
 - ③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한다.
 - ④ 비급여 비용은 기관의 원장이 보호자 또는 운영위원회를 거쳐 변경 한다.

제3조 (이용료 납부)

1. 이용자나 보호자는 그 달 이용료를 기재된 납부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3.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알림톡, 이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하거나 우편 발송한다.
4.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5. 이용자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기관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에서는 현금 수령 후 은행에서 직접 무통장입금을 시행한다.

2026년 주.야간보호 등급별 급여비용 및 월한도액

『2026년 월 이용료 한도액』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등급
한 도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20%+	3,015,480	2,797,440	1,833,840	1,691,640	1,450,680	—

월15일(1일 8시간 이상)이용: 등급별 월 한도액 20%범위내에서 추가 산정

『2026년 급여비용 안내』

분류	등급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비고
			15%	9%	6%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1등급	41,820	6,273	3,764	2,509	
	2등급	38,720	5,808	3,485	2,323	
	3등급	35,740	5,361	3,217	2,144	
	4등급	34,120	5,118	3,071	2,047	
	5등급	32,490	4,874	2,924	1,949	
	인지	32,490	4,874	2,924	1,949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1등급	56,060	8,409	5,045	3,364	
	2등급	51,930	7,790	4,674	3,116	
	3등급	47,940	7,191	4,315	2,876	
	4등급	46,300	6,945	4,167	2,778	
	5등급	44,650	6,698	4,019	2,679	
	인지	44,650	6,698	4,019	2,679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1등급	69,730	10,460	6,276	4,184	
	2등급	64,590	9,689	5,813	3,875	
	3등급	59,640	8,946	5,368	3,578	
	4등급	58,010	8,702	5,221	3,481	
	5등급	56,360	8,454	5,072	3,382	
	인지	56,360	8,454	5,072	3,382	
10시간 이상 / 13시간 미만	1등급	76,820	11,523	6,914	4,609	
	2등급	71,160	10,674	6,404	4,270	
	3등급	65,750	9,863	5,918	3,945	
	4등급	64,090	9,614	5,768	3,845	
	5등급	62,460	9,369	5,621	3,748	
	인지	56,360	8,454	5,072	3,382	

*일요일.공휴일은 30% 가산 있습니다.

『2026년 비급여비용 안내』

비급여 항목	금 액	합계	비 고
식사 1식(1일2식)	1,500원 (3,000원)	4,000원	
간식비 1회(1일2회)	500원 (1,000원)		